

신 탁 계 약 서 변 경 비 교 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~⑤(생 략)</p> <p>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⑦~⑩(생 략)</p>	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~⑤(현행과 같음)</p> <p>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한다. 다만, <u>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),</u>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(<u>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</u>)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⑦~⑩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<u>부 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